



제 39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웅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111549호)

2021. 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김 건 오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웅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1. 7. 16.

3. 회 부 일 : 2021. 7.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경찰은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중앙집권적 단일 조직의 국가경찰체제를 바탕으로 치안·정보·보안·경비·교통 등을 독점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 경찰은 독점적인 국내정보 수집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세계적으로 그 유례가 없는 것으로 일제 경찰 사범의 잔재라는 지적이 있음.

또한 우리나라 정보경찰은 현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및 배포’라는 직무규정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보경찰업무를 수행 하고 있으나, 정보경찰이 실제로 수집하고 있는 정책정보 및 치안정보는 범죄의 수사 또는 국민 안전 보장을 위한 정보라고 보기 어려운 불필요한 정보들이 대부분임.

특히, 경찰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보국 외근 정보관들의 전체 업무

중 ‘범죄첩보’ 작성은 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보경찰은 본연의 범죄첩보 수집 보다는 이외 다른 목적을 위해 존재함을 방증하고 있음.

이에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 및 국민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웅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안전정보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1543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47호),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51호),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45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44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48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Ⅲ. 검토의견

1. 해양경찰의 직무에서 해양에서 정보 수집 등에 관한 활동의 수행 근거 삭제(제14조제3항 삭제)

개정안은 해양경찰의 직무에서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활동(이하 “정보활동”이라 함)의 수행 근거를 삭제하고, 국내 치안정보 수집 등 정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¹⁾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직무) ①·② (생략) ③ <u>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 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 · 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 한다.</u> ④·⑤ (생략)	제14조(직무) ①·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안에 대한 입법배경을 살펴보면 「국가정보원법」 개정²⁾에 따라 국가정보원의 국내정보 수집 기능이 제한²⁾된 이후 해양경찰청과 경찰청

1) 김웅의원 대표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11544, 제안일 2021. 7.16.) 제22조의3(국가안전정보처) ① 국내 치안정보 수집 등 정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안전정보처를 둔다.

② 국가안전정보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과 차장은 정무직으로 한다.

2) 2018.1.14. 청와대는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안 발표문’을 공개하며, 국내정치정보 수집 금지를 명시한 바 있으며,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 등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2020.12.10.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음.

등 경찰권이 국내정보를 독점할 수 있는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³⁾으로 기존보다 강화된 수사권이 부여된 경찰권이 비대해져 인권침해 뿐만 아니라 국가기관 간 권력 균형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개정안과 관련 개정법률안에서 국가기관 간 권력의 균형 확보 차원에서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의 직무에서 정보 관련 사무를 삭제하고, 국무 조정을 수행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기관으로서 국가안전정보처를 신설하여 정보 관련 사무를 담당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여짐.

그러나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신중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해양경찰을 비롯한 경찰은 범죄·재난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본연의 임무를 위하여 ‘수사’ 등 사법경찰작용 이전에 ‘예방·대응’ 경찰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사전에 위협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절차가 수반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경찰활동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음.

그런데 위협요인을 파악하는 정보활동이 경찰조직에서 분리되어 타 기관으로 이전되는 경우, 기관 또는 기능 간 정보공유 지연 또는 실패로 인하여 정보의 신속성 및 적시성이 저하되어 위협 예방·대응의

3) 2020. 1.13.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경찰 본연의 임무수행에 차질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음.

둘째, 해양경찰은 「해양경찰법」 제2조⁴⁾ 및 제14조⁵⁾에 따라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을 수행하며, 대북상황 및 주변국의 해양 패권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안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따라서, 북한의 끊임없는 안보위협과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의 경우 해양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독도·이어도 등 해양영토 도발과 불법조업 어선 등 비군사적인 패권 경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수행하는 해양경찰의 정보활동 권한을 해양에 대한 전문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안전정보처로 이전하는 것은 해양안보에 공백을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개정안과 관련하여 해양경찰청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어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임.

우선, 최근 해양경찰청은 경찰청과 함께 경찰의 정보활동에 대한

4) 「해양경찰법」 제2조(해양경찰의 책무)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해양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해양경찰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보호하고 해양영토를 수호하며 해양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5) 「해양경찰법」 제14조(직무) ① 해양경찰은 해양에서의 수색·구조·연안안전관리 및 선박교통 관제와 경호·경비·대간첩·대테러작전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②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해양관련 범죄의 예방·진압·수사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③ 해양경찰은 해양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④ 해양경찰은 해양오염 방제 및 예방활동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⑤ 해양경찰은 직무와 관련된 외국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경찰개혁위원회 권고(2018.4월)에 따라, 국회 논의를 거쳐 정보의 범위를 ‘치안정보’에서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로 명확히 하고, 공공안녕 위협과 관련 없는 정치·민간분야의 정보수집을 금지하는 등 법적 통제장치 마련을 위해 「경찰관 직무집행법」 및 「경찰공무원법」을 처리(2020.12월) 하였고, 해당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정보활동의 구체적 범위·절차 등을 규정한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1555호, 2021. 3. 21 시행)을 제정하였으며, 자체적으로도 「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245호, 2021. 7.26 시행), 「정보경찰 행동강령」을 마련하는 등 민주적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음.

다음으로, 미국·중국·일본 등 해양경쟁국들은 급변하는 국제해양정세 등 해양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국 해양경찰 조직의 정보기능을 강화하는 추세⁶⁾이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해상테러 위협증가, 감염병 확산, 기후변화 등 새로운 해양환경의 변화에 따른 각종 위기상황을 조기에 파악하고 실효적 대응을 위해서는 현재의 해양경찰 정보역량을 유지하고 강화시킬 필요가 있음.

종합해 보면 개정안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권과 정보권의 결합에 따른 경찰권의 비대화 및 인권침해 우려를 불식시키려는 입법취지와 함께 위에서 지적한 신중 검토가 필요한 사항 및 해양경찰청의 반대 입장 그리고 타 위원회 소관 관련 법률안들의 심사 경과를 종합적으로

6) 불임자료2 참조

고려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필요가 있다고 봄.

문 의 처

02)6788-5425

- ◆ 「해양경비법」 제7조(해양경비 활동의 범위)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이하 “해양경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양 경비 활동을 수행한다.
 1. 해양 관련 범죄에 대한 예방
 2. 해양오염 방제 및 해양수산자원 보호에 관한 조치
 3. 해상경호, 대(對)테러 및 대간첩작전 수행
 4. 해양시설의 보호에 관한 조치
 5. 해상항행 보호에 관한 조치
 6. 그 밖에 경비수역에서 해양경비를 위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 ◆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8조의2(정보의 수집 등) ① 경찰관은 범죄·재난·공공갈등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와 처리 기준,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 절차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경찰공무원법」 제23조(정치 관여 금지) ① 경찰공무원은 정당이나 정치 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정보활동의 기본원칙 등) ①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의 수집·작성·배포와 이에 수반되는 사실의 확인을 위해 경찰관이 수행하는 활동(이하 “정보활동”이라 한다)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하며,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

② 경찰관은 정보활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행위
2. 법령의 직무 범위를 벗어나 개인의 동향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생활에 관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는 행위
3. 상대방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자료 제출이나 의견 표명을 강요하는 행위
4. 부당한 민원이나 청탁을 직무 관련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5.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
6. 직무와 무관한 비공식적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

③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정보활동이 적법하게 이루어지도록 현장 점검·교육 강화 방안 등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3조(수집 등 대상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경찰관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의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정보
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26조의2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의3에 따라 통보되는 정보의 대상자인 수형자·가석방자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3. 국가중요시설의 안전 및 주요 인사(人士)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4. 방첩·대테러활동 등 국가안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정보
5. 재난·안전사고 등으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
6. 집회·시위 등으로 인한 공공갈등과 다중운집에 따른 질서 및 안전 유지에 필요한 정보
7.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책에 관한 정보[해당 정책의 입안·집행·평가를 위해 객관적이고 필요한 사항에 관한 정보로 한정하며, 이와 직접적·구체적으로 관련이 없는 사생활·신조(信條) 등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8. 도로 교통의 위해(危害) 방지·제거 및 원활한 소통 확보를 위한 정보
9. 「보안업무규정」 제45조제1항에 따라 경찰청장이 위탁받은 신원조사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령에 근거하여 요청한 사실의 확인을 위한 정보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에 준하는 정보

◆ 「해양경찰청 정보경찰 활동규칙」(해양경찰청훈령) 제2조(정보활동의 범위)
 해양경찰청 및 소속기관 정보부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하 “정보관”이라 한다)은 해양에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해양경비법」 제7조 각 호에 관한 정보활동
2. 「경찰관의 정보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각 호에 관한 정보활동(제8호 및 제9호는 제외)

제5조(해상 집단행동에 대한 질서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정보활동) ① 정보관은 해양 관련 집회·시위 및 해상 집단행동에 대한 정보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참가자의 요구와 주장을 경청하여 그 의사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정보관은 해양 관련 집회·시위 및 해상 집단행동의 주최자, 연락책임자 및 그 밖의 관계자와 상호연락 등을 통해 집회·시위 및 해상 집단행동 사항의 변경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정보관은 해양 관련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과 참가자의 안전 및 해상 집단행동에 대한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지형·구조물 등에 의한 안전사고의 예방과 대응
2.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품의 휴대·반입 또는 시설물·수역 및 항로의 점거·차단 등 불법행위의 예방과 대응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 범죄 등 공공안녕에 대한 위협의 예방 및 대응

④ 해양경찰관서장은 해양 관련 집회·시위 및 해상 집단행동 현장에서 대화·협의를 통한 안전 조치 등 업무를 수행하는 소통정보관을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공공단체 선거관련 위협의 예방·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① 정보관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 공공단체 위탁선거와 관련된 위협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활동을 할 수 있다.

1. 선거와 관련된 사건·사고의 상황 파악 및 대응을 위한 정보활동
2. 선거 후보자 등에 대한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보활동

② 정보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온라인상에서 정치적 내용의 글을 작성하거나, 타인이 작성한 정치적 내용의 글을 추천·공유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 등에 대한 풍문, 여론조사 결과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글 등을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

【미국】

○ 미국은 2001년 9.11 테러이후 USCG 정보 수사국 강화, CIA·FBI 등의 정보공동체(DNI)에 참여시켜, 해양본토위협·해양 방 첩 등의 대응력 강화



* 2001년 해양본토위협부서 설치, 2003년 해양정보융합센터 2개소(대서양·태평양) 설치, 현장 정보팀 운영(각 항만에서 정보활동), 암호담당부서 설치, 정보전문가 제도화 등

【중국】

○ 중국은 2013년 해양법집행 조직을 해경국으로 통합 후, 정보처를 통해 한반도 및 동북아 해역의 지질·군사·자원 등 쏘 해양정보 수집(정보력 강화)



* 해경국 함정 등을 통해 해양조사(군사·자원·환경 등) 실시 및 지역해 정보 수집
 ** 해양정보센터를 통해 중국 모든 해양연구기관 자료를 결집, 해양경계획정 전략 등에 사용

【일본】

○ 일본은 2018년 해양기본계획에서 5년간 해양안전·해양상황인식 강화 천명, 2015년부터 일본정부 정보 공동체(내각정보회의)에 해보청 참가



* 해상보안청에서 쏘 해양정보 수집·일원화(해양정보부(일반정보), 경비구난부(경비정보)), 일본 해역을 출입항하는 북한 등 외국적선박 연 7만척에 대한 정보 모두 파악 후 관리
 ** 일본 해보청은 2015년 분석관 85명을 증원하여 정보분석을 집중 강화한 것에 주목 필요